

의안번호	2215885
의 회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 2. 11.
추계번호	26A008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5호의2(정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	의무규정
2	안 제12조제1항(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 대상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	재량규정
3	안 제30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5호의2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제1항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3	안 제30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하고(안 제2조제5호의2), ②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인 고용 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도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하며(안 제12조제1항), ③장기재직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안 제30조의2 신설) 내용으로 국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

- 안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이 상향조정되면 이를 인용하여 재정 지원을 정하고 있는 제12조의2¹⁾ 및 제35조의5²⁾ 등 관련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청년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안 제12조에 따라 고용 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상한이 상향조정되면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예산 반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안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 및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 우수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분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①현재 고용장려금 이외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이 부재하고 ②고용장려금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 기준을 해당 법률에서 여전히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③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근로자 및 장기재직 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산 확대 가능성과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없으므로 기존 사업의 확대를 가정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내용 및 지원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현행법 제35조의5의 경우 “내일채움 공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해당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 가입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안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³⁾이 있으나, 이는 해당 부 소관 법률인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이하 각 호 생략)

3) 사업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고용 지원 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지원 실적‘

- 안 제30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정보의 취득이 현시점에서 곤란하여 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의 수와 이들의 주택차입·임차 수요 등에 대해 추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의 취득이 어려움
 -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지원 등을 하게 될지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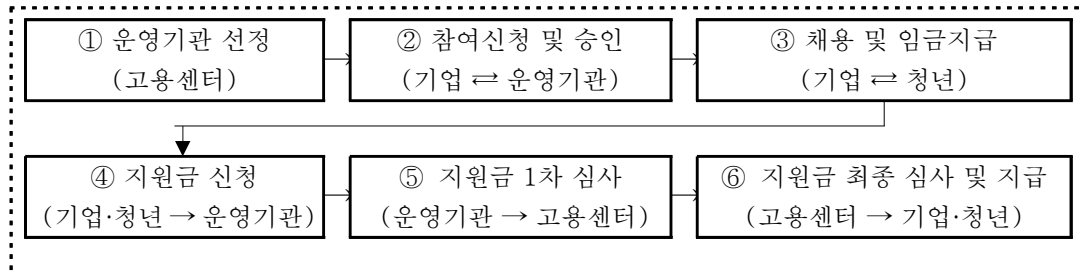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654	shjang@assembly.go.kr

[참고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지원 실적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지원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수도권)** 취업으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으로청년) 만 15~34세의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실적)** 20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6,785억원, 해당 기업에 고용된 청년에게 133억원 지원
(단위: 개, 명, 백만원)

연도	우선지원대상기업 ¹⁾ 수	청년 수	지원 금액
2022년	47,634	113,700	(기업) 203,996
2023년	38,735	88,649	(기업) 700,113
2024년	39,472	101,519	(기업) 520,951
2025년	38,361	105,385	(기업) 678,527
			(청년 ²⁾) 13,304

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이 포함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 300명 이하

2) 청년에 대한 지원은 2025년부터 도입